

대한석탄공사 비위 의혹 조사

1. 조사배경

□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 대한 ‘2017년 시설관리작업 용역 입찰 비리 의혹 제보 건’ 이 감사원으로부터 이첩(‘22.9.30.)되어 조사

2. 조사결과

- 자격조건에 특정한 명칭‘광업소’로 제한 : 사실이 아님
 - ‘17년 입찰참가 자격 조건을 ‘광업소내’ 실적 보유자로 제한하지 않고, 용역내용에 경비·청소·교환 작업장소가 ‘광업소내’임 명시한 것임
- 청소, 객실관리 등 실적을 모두 갖춘자로 제한 : 일부 사실
 - 입찰자격요건으로 4개 분야 모든 실적을 요구한 사실은 과도한 제한으로 인정되나, ‘17년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적용되어온 내용으로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특혜부여 목적 여부는 확인 불가
 - 대한석탄공사에서는‘09년부터 외주효율화 및 인력절감을 위하여 광업소 시설경비, 청소, 교환, 객실관리를 통합 발주토록 시달
 - 자격요건으로 업무특성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시설경비와 교환 분야는 해당실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,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청소와 객실관리 분야까지 실적요구는 과도한 제한임

3. 조치내용

- 향후 계약업무 수행 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관주의